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39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6. ~ 9.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를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41조제1항”을 “고객 등 제3자로부터 받은 법 제41조제1항”으로, “폭언등”을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를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u>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u>)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 · 2. (생략) 3. <u>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u>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u>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u>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41조(<u>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u>)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고객 등 제3자로부터 받은 법 제41조제1항----- 폭언등(이하 이 조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이라 한다)---</u> -- 4. ----- ----- -- <u>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809